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628
----------	-----

제안연월일 : 2019. 4.25.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99번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4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의 점·소 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 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토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22조의2 신설)
- 공공청사의 점등·소등시간 고려사항에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

역특성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 상업·공업지역에 지정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공업활동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4호)
-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상업활동”을 “상업활동 및 공업활동”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보안성”을 “보안성,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제3호”를 “제16조제1항제3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광고조명"이란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p> <p>3. ~ 5. (생 략)</p> <p>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u>상업</u> 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상업</u> 활동 및 공업활동----- ----- ----- -----</p>

는 구역

② ~ ③ (생략)

<신설>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생략)

② 공공청사의 장은 벽부등 및 청사 주변에 설치한 조명에 대해 야간 환경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경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안성,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16조제1항제3호

3. 「경관법」 제16조에 따라 경
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경우

② (생략)

3. ----- 제19조-----

② (현행과 같음)